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
2025. 6. 23.(월) 10:00

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735호
- 나. 제 출 자 : 고영찬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5. 5. 29.
- 라. 회부일자 : 2025. 5. 29.

2. 제안이유

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있어 표결 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하지 않고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조항의 내용을 수정함으로써, 회의 운영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법제처 자치법규 일제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장이 두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조항의 내용을 삭제함
(안 제10조제4항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이유

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위원회 표결에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

나. 주요 내용

법제처 자치법규 일제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장이 두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조항의 내용을 삭제함
(안 제10조제4항)

다. 검토의견

- 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은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며 가부동수이면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된 것이 당연하고, 위원장에게 다시 결정권을 주는 것은 공정한 의사결정 방식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봄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5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3. 8. 8., 2024. 1. 9.>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
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
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
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
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
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
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
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
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
자. 공유재산(公有財産) 관리

차. 주민등록 관리

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
-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- 3. 농림·수산·상공업 등 산업 진흥
 - 가. 못·늪지·보(洑)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나.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
 - 다. 농업자재의 관리
 - 라. 복합영농의 운영·지도
 - 마.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·지도
 - 바. 농가 부업의 장려
 - 사. 공유림 관리
 - 아.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
 - 자. 가축전염병 예방
 - 차. 지역산업의 육성·지원
 - 카.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
 - 타. 중소기업의 육성
 - 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·지원
 - 하. 우수지역특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
- 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
 - 가. 지역개발사업
 - 나. 지방 토목·건설사업의 시행
 - 다. 도시·군계획사업의 시행
 - 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도(市道)·군도(郡道)·구도(區道)의 신설·개선·보수 및 유지
 - 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 - 바.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 - 사. 자연보호활동
 - 아.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 - 자. 상수도·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 - 차.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카. 도립공원, 광역시립공원, 군립공원,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
 - 타.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, 녹지,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파. 관광지,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하. 지방 퀘도사업의 경영

- 거. 주차장 ·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너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- 더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- 5. 교육 · 체육 · 문화 · 예술의 진흥
 - 가. 어린이집 · 유치원 · 초등학교 · 중학교 ·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· 운영 · 지도
 - 나. 도서관 · 운동장 · 광장 · 체육관 · 박물관 · 공연장 · 미술관 · 음악당 등 공공교육 · 체육 ·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다. 시 · 도유산의 지정 · 등록 · 보존 및 관리
 - 라. 지방문화 · 예술의 진흥
 - 마. 지방문화 · 예술단체의 육성
- 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
 - 가.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(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)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 · 감독
 - 나. 지역의 화재예방 · 경계 · 진압 · 조사 및 구조 · 구급
- 7. 국제교류 및 협력
 - 가. 국제기구 · 행사 · 대회 유치 · 지원
 - 나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· 협력